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- 137호

『2023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』(국토교통부 고시)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9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2023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이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[별표3] 제1호 가목에서 라목에 해당하는 생계·의료 수급자 등인 경우 매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새로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, '23년에 적용할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공표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□ 2023년도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

(단위 : 원/㎡, 주거전용면적 기준)

구 분	급지기준	표준임대보증금	표준임대료
1급지	서울특별시	108,072	2,153
2급지	광역시 및 수도권	102,489	2,041
3급지	인구 30만 이상 도시, 도청소재지	97,134	1,933
4급지	그 밖의 지역	92,199	1,833

※ 「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」 제2호 가목에 따라 전년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주거비물가지수(상승률)을 곱하여 산정

3. 의견제출

이 「2023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로 2023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

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(우편번호 339-012)

☎ 044-201-3354, -4517, Fax 044-201-5663